

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건 서

1.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(안) 개요

제2차매립기본계획서상(당초)			타당성 수요조사(변경안)	
매립지구명 (매립위치)	매립용도	매립면적(km ²)		변경내용 및 사유
		1단계 (‘01~’05)	2단계 (‘06~’11)	
다대 I 지구 (다대포해수욕장)	기타시설용지 (친수공원조성)	0.150000		· 1단계→2단계로 변경 · 제차 연안정비계획 2단계사업 (2005-2009)반영됨
다대 V-1지구 (삼미매립지서측 야망정앞)	도시용지 (도로부지확보)		0.012000	· 폐 지 · 계획도로변경(공유수면제척)으로 매립기본계획에서 제외

2. 청취안에 대한 의견

- 본 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(안)은 연안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사하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다대포 해수욕장 친수공원조성과 삼미매립지 서측 야망정앞 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계획 취소를 위한 것으로서
-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친수공간 조성 및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향후 추진되는 지하철1호선 연장공사시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를 조속히 확보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(안)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다만,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구의회 의견 청취가 수반되는 계획도로 변경에 있어서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.

2006. 3. .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